



적응 가능 공중 라이선스

적용 가능 공중 라이선스

Version 1.0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은 본 적응성 공중 라이선스(“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사용 및 복제, 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수취인이 본 라이선스의 조항들을 읽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취인이 본 라이선스와 그 조건을 승낙했음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수취인”은 아래에 정의되어 있다.

주의 사항: 본 라이선스는 “adaptive”이며, 본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당신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데 있어 적용성 공중 라이선스의 일반 버전이나 기타 버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본 라이선스의 일부 규정들은 당초에 최초 기여자에 의해 정의된 만큼, 당신은 본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함께 양도받은 적응성 공중 라이선스를 상세히 읽어야 한다.

본 라이선스에 적용시킬 수 있는 특정한 적용 가능 특징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제 2 조 2 항 및 첨부된 Exhibit A, 그리고 본 라이선스에 동봉된 모든 Suppfile.txt 를 참고하라. 예를 들면,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한 제한 없이, (a) 선별된 법률 및 판결을 보려면 Exhibit A 의 Part 3 을 참고하라; (b) 제 3 자에 대한 선별된 정의를 위해서는 Exhibit A 의 Part 4 를 참고하라; (c) 선별된 특허 라이선스 규정을 보려면 아래의 제 2 조 2 항과 Exhibit A 의 Part 6 을 참고하라.

제1조. 정의

1 조 1 항. "기여"란:

(a) 최초 개발자의 경우, 최초 개발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배포한 최초 저작물을 의미한다. 또한,

(b) 그 후속 기여자의 경우, 그러한 기여자에 의해 창작되고 배포된 후속 저작물을 의미한다.

1 조 2 항. "지정 웹사이트"란 Exhibit A 의 Part 1 에 정의된 URL 을 지닌 웹사이트로, 이 URL 은 최초 기여자가 기존의 지정된 웹사이트에 새로운 URL 을 적어도 60 일 이상 공지를 하는 조건에 한해 변경될 수 있다.

1 조 3 항. "배포자"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그 일부를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제 3 자에게 배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 조 4 항. "전자 배포 방식" 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 방식이다.

1 조 5 항. "실행파일" 이란 소스 코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의미한다.

1 조 6 항. "재판 관할지" 란 Exhibit A 의 Part 3 에 정의된, 주(州), 지방 또는 기타 사법적 관할권을 의미한다.

1 조 7 항. "독립 모듈" 이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그 일부로부터 파생되거나 복제된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의 개별적 모듈 및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모듈이 (a)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b)함수 호출이나 클래스 참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참조로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c) 사실상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구성하는 파일들을 포함하는 파일 디렉토리나 서브디렉토리 내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그 모듈은 독립 모듈로 인정되지 않고, 대신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한다.

1 조 8 항. "최초 기여자" 란 Exhibit A 의 Part 1 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에 최초 기여자로 정의되어 있는 개인이나 주체를 의미한다.

1 조 9 항. "최초 저작물" 이란 Exhibit A 의 Part 2 에 정의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최초의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및 문서를 의미한다. 그러한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및 문서는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최초 기여자에 의해 배포된다.

1 조 10 항. "복합저작물" 이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그 일부를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코드와 결합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1 조 11 항.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 이란 최초 저작물이나 그 일부 및 후속 저작물이나 그 일부를 의미한다.

1 조 12 항. "라이선스 고지" 란 Exhibit A 의 Part 5 에 지정된 의미를 지닌다.

1 조 13 항. "수정" 이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모든 수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을 의미한다.

1 조 14 항. "사람"이란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주식회사, 제휴관계 및 기타 집단이 모두 포함된다.

1 조 15 항. "수취인" 이란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양도받거나 획득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후속 기여자나 배포자가 이에 해당한다.)

1 조 16 항. "소스 코드" 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소스 코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과 구성요소에 대한 소스 코드, 그리고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및 실행파일의 컴파일과 설치를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스크립트가 포함된다.

1 조 17 항. "후속 기여자" 란 후속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작성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후속 저작물을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제 3 자에게 배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 조 18 항. "후속 저작물" 이란,

- (a) 최초 저작물,
- (b) 후속 저작물, 또는
- (c) 최초 저작물과 후속 저작물을 결합한 모든 형태의 결합 저작물

에 대해 변경이나 추가를 가한 결과로서 발생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그러한 변경 사항이나 추가사항은 후속 기여자로부터 발생한다. 후속 저작물이 그러한 후속 기여자(혹은 그 후속 기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 예를 들면 후속 기여자와 계약을 맺은 계약자나 그의 지시를 받는 기타 주체)의 노력의 결과인 경우, 후속 저작물은 후속 기여자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후속 저작물이 그러한 후속 기여자의 노력의 결과인 경우, (혹은 그 후속 기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 예를 들면 후속 기여자와 계약을 맺은 계약자나 그의 지시를 받는 기타 주체가 이에 해당한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후속 저작물은 어떠한 독립 모듈도 명시적으로 배제하며 의미상으로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조 19 항. "보충 파일" 이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함께 배포되는, 파일명이 “suppfile.txt”인 파일을 의미한다.

1 조 20 항. “제 3 자” 는 Exhibit A 의 Part 4 에 지정된 의미를 지닌다.

제2조. 라이선스

2 조 1 항. 최초 및 후속 기여자가 부여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a)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구속되어, 최초 기여자는 각 수취인에게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이 저작권 라이선스는,

(i) 최초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파생저작물의 작성, 전시, 공연, 배포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 그리고

(ii) 수취인에 의해 작성된 파생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시, 공연, 배포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을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의 형태로, 원본 그대로 또는 다른 수정본과 함께, 또는 복합저작물의 일부로서 허용하는 라이선스다.

(b)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구속되어, 각각의 후속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이 저작권 라이선스는,

(i) 그러한 후속 기여자의 후속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파생저작물의 작성, 공개적 전시, 공연, 배포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 그리고

(ii) 수취인에 의해 작성된 파생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시, 공연, 배포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을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의 형태로, 원본 그대로 또는 다른 수정본과 함께, 또는 복합저작물의 일부로서 허용하는 라이선스다.

2 조 2 항. 최초 및 후속 기여자가 부여하는 특허 라이선스

(a) 최초 저작물이 최초로 배포되거나 본 라이선스에 의해 최초로 제공된 시점에 최초 기여자가 Exhibit A 의 Part 6 에 의거하여, Exhibit A 의 Part 6 에 있는 A, B, C, D, E 절의 특허 조건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 라이선스는 최초 기여자와 후속 기여자, 혹은 기타 배포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특허 라이선스도 포함하거나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 최초

저작물과 모든 후속 저작물은 어떠한 특허 라이선스도 없이 본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된다(“특허 배제 라이선스”).

(b) 그러나, 최초 기여자는 후속적으로, (1) 최초 저작물, 또는 (2) 최초 저작물을 포함하여, 최초 기여자에 의해 배포된 모든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그 일부, 그리고 최초 기여자에 의해 만들어진 수정본의 미래 복제본을 배포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최초 기여자가 그러한 미래의 복제본을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배포하거나 제공할 때, Exhibit A의 Part 6에 의거하여 Exhibit A의 Part 6에 있는 A, B, C, D, E 절의 특허 규정을 선택함으로써 특허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라이선스(“특허 포함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c) 만약 어떤 수취인이 특허 포함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최초 저작물에 대한 한 개 이상의 복제본 또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기타 다른 부분을 양도받는다면, 본 라이선스에 따라 이러한 복제본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설정할 때는 항상 Exhibit A의 Part 6에 있는 A, B, C, D, E 절의 조건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수취인은 그러한 복제본에 대해 특허 배제 라이선스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 배제 라이선스를 포함한 라이선스 복제본에 의거하여, 최초 저작물에 대한 하나 이상의 복제본, 또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기타 다른 부분을 양도받은 모든 수취인은 특허 배제 라이선스에 따라 양도받은 그러한 복제본에 대해서는 특허 라이선스를 지닐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복제본 (및 그 복제본에 대해 수취인이 만든 수정본)의 제공 및 배포는 특허 라이선스 없이, 본 라이선스의 복제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d) 수취인이 특허 배제 라이선스를 지닌 라이선스의 복제본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설정된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혹은 그 일부)을 특허 포함 라이선스를 지닌 라이선스의 복제본에 의거하여 라이선스가 설정된 라이선스 저작물(혹은 그 일부)과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결합물(및 그 일부)은 그 수취인이 결합물을 최초로 사용, 제공, 혹은 배포하는 시점부터, Exhibit A의 Part 6의 A, B, C, D, E 절의 규정을 포함하는, 특허 포함 라이선스를 지닌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아야 한다.

2 조 3 항. 승인 및 부인

수취인은, 최초 기여자와 각 후속 기여자가 여기에 설명된 바에 따라 기여물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 다른 주체가 소유한 특허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증이나 보장 혹은 확인도 최초 기여자나 후속 기여자, 혹은 배포자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최초 기여자와 후속

기여자 및 각 배포자는 수취인에 대해,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기반하여 다른 어떠한 주체에 의해 야기된 청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인한다. 여기에서 부여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행사하는 조건으로, 각각의 수취인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의무를 단독으로 진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부인 사항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취인이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배포하는데 제 3 자의 특허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경우,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배포하기 전에 해당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2 조 4 항. 유보

본 라이선스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초 기여자나 후속 기여자, 혹은 배포자의 상표나 저작권, 특허, 업무상의 비밀 혹은 기타 지식재산권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배포 의무

3 조 1 항. 일반적 배포

(a) 후속 기여자는 자신의 후속 저작물을 전자 배포 방식을 통해 공중에게 적어도 12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공해야 한다. 이 12 개월 기간의 시작 지점은 후속 저작물의 최초 작성 후 적절한 시간 이내로, 이 후속 기여자의 후속 저작물을 최초로 배포한 날로부터 60 일이 경과하기 이전으로 해야 한다.

(b) 모든 배포자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포해야 하고, 본 라이선스의 사본 1 부를 (Exhibit A 와 동봉된 보충 파일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배포되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각 복제본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본 라이선스는 눈에 띄게 있도록 “license.txt” 라는 이름의 파일 내에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함께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Exhibit A 의 Part 5 에 있는 라이선스 주의사항은 모든 소스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어떤 실행파일로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이의 주목을 적절하게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조 2 항.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실행 파일 형태의 배포

배포자는 본 라이선스의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 3 자에게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그 일부를 실행 파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실행 파일 형태의 배포**”). 단, 이는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가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배포 시에 본 라이선스의 사본이 동봉되며, 또한 다음의 조건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a)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가 동봉되어야 하며, 그 소스 코드는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와 동일한 매체, 혹은 전자적 배포 방식을 통해 배포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에는 소스 배포를 물리적으로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받고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를 구성하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 코드의 복제본을 전자적 배포 방식을 사용하여 제공 및 배포될 수 있도록 제 3 자에게 제공한다는, 적어도 36 개월 이상 유효한 서면 약정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실행파일 형태의 배포는 제 3 자 누구나 전자적 배포 방식(또는 해당 배포자가 필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대체할 만한 전자 배포 방식)을 통해 소스 코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36 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들은 제 3 자에게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된 모든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 및 그 일부에 적용된다. 이는 그러한 배포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복합저작물이나 독립 모듈들과 결합된 형태, 혹은 그 외의 결합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나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조 3 항. 소스 코드의 배포

배포자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그 일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소스 코드의 각 사본에는 본 라이선스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때 라이선스의 사본은 받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동봉되어야 한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 3 조 3 항은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되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배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배포자는 복제본을 물리적으로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소스 배포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조 4 항. 소스 코드의 고지사항

각각의 후속 기여자는 Exhibit A의 Part 5에 제시된 고지사항을 해당 후속 기여자로부터 발생한 각 후속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의 각 파일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그러한 고지사항이 이미 각각의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어떤 특정한 소스 코드 파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그러한 고지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후속 기여자는 사용자가 그러한 고지사항을 찾아볼 만한 위치(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관련 디렉토리 등)에 해당 고지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조 5 항.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수정본에는 배포의 의무가 없음

제 3 조 2 항과 3 조 3 항, 3 조 4 항과 관계없이, 수취인은 자신의 회사나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최초 저작물과 후속 저작물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취인 자신의 회사나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이들을 “내부사용 수정본”이라고 칭함). 수취인은 아래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사용을 위해 작성한 수정본을 소스 코드나 실행파일의 형태로 배포할 의무가 없다. 제 3 자건 아니건 어떤 누군가에게 배포된 모든 내부사용 수정본은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동봉해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수취인이 그러한 내부 사용 수정본을 어떤 제 3 자에게 배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 수취인은 후속 기여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제 3 자에게 배포된 내부 사용 수정본은 해당 후속 기여자로부터 발생한 후속 저작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부 사용 수정본은 배포된 최초의 순간부터, 제 3 조의 1 항에서 4 항까지의 규정들에 따라 제 3 자에게 제공되고 배포되어야 하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일부가 된다.

3 조 6 항. 독립 모듈

본 라이선스는 최초 기여자나 후속 기여자, 배포자 혹은 수취인의 독립 모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독립 모듈들은 한 개 이상의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서들에 따라서 제공하거나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다.

3 조 7 항. 복합저작물

어떤 배포자나 수취인이라도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다른 코드를 함께 결합함으로써 복합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복합저작물을 한 개 이상의 제품으로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배포자나 수취인은

(해당 경우에 따라) 복합저작물 내의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 부분에 대하여 본 라이선스의 요구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조 8 항. 배포된 수정본의 설명

(a) 각각의 후속 기여자는 (최초 기여자가 후속 기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초 기여자도 포함하여) 그 후속 기여자에 의해 작성되거나 기여된 각각의 후속 저작물 내에, 그 후속 기여자가 그 후속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기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들을 기록하는 파일이, 보충 파일의 Part 1 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방식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보충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충 파일의 Part 1 에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후속 기여자가 후속 저작물을 만들면서 발생한 변경사항들을 기록할 의무가 없다.

(b) 최초 기여자는 언제라도 후속 저작물의 발생을 야기하는 변경사항들을 기록하라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요구사항(각각의 경우, “**기존의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 변경이나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미래 복제본에 대하여, 최초 기여자에 의해 배포된 보충 파일의 각 복제본의 Part 1 이 그러한 변경사항의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새로운 설명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c) 언제든지 본 라이선스의 복제본에 의거하여 기존의 설명 요구사항을 지닌 어떤 최초 저작물이나 후속 저작물의 복제본(각각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 적용 복제본**”)을 양도받는 모든 수취인은, 그러한 각각의 기존 라이선스 적용 복제본에 대하여 기존의 설명 필수사항이나 새로운 설명 요구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취인이 새로운 설명 요구사항을 따르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수취인은 그 이후에 그러한 기존 라이선스 적용 복제본을 배포할 때는 서플먼트 파일을 포함시키고, 그 안에 Part 1 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설명 요구사항의 사본을 넣어야 한다.

(d)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보충 파일의 Part 1 의 의도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변경을 가해서 후속 저작물을 생성하게끔 야기한 후속 기여자가 자신이 만든 변경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떠한 보충 파일의 Part 1 도 본 라이선스의 제 2 조에 부여된 라이선스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수취인의 권한이나 의무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본 라이선스의 종료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수취인에 대해 보충 파일의 Part 1 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화 과정을 교정하거나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손해 배상을 부과할 수는 없다. 모든 보충 파일의 Part 1 은 어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수취인에 대하여, Part 1 이 최초 저작물이나 어떤 후속 저작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록하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정도로까지만 구속력이 있다.

(e) 후속 기여자에 의한 변경과 기여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일련의 예시가 본 라이선스의 Exhibit A 의 Part 7 에 제시되어 있다. Part 7 은 예시에 불과하며, 그것이 본 조항의 앞부분의 내용에 구속되어 최초 기여자가 본 라이선스에 따라 최초 저작물의 복제본들을 배포하면서 보충 파일의 Part 1 에 포함시키는 요구사항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3 조 9 항. 배포자 이름의 사용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배포자의 이름이 다른 배포자에 의해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서 파생된 제품을 추천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조 10 항. 최초 기여자에 대한 제한적 공로 인정

(a) 최초 기여자의 공로를 적절하게 인정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홍보적 가치가 최초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정당화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망 하에, 최초 기여자는 최초 저작물이나 후속 저작물의 결과로 발생한 실행 프로그램, 또는 그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이 출시되거나 실행될 때마다, 최초 기여자의 공로에 대한 정보(“공로 정보”)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보충 파일의 Part 2 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공로 정보는 각 소스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최초 기여자는 보충 파일에 위의 공로 요구사항이 최초 저작물이나 후속 저작물로부터 발생한 실행 파일에만 적용되며, 그것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상술할 수 있다. 의도는 적절한 정도의 공로 인정을 합당하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초 기여자는 수취인에게 어떤 시점에서든 다음의 공로 정보 이상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즉, (a) 최초 기여자의 이름을 포함하는 저작권 표시, (b) 1 개의 단어 나 10 개의 단어 이하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문, (c) 최초 저작물과 함께 제공되는 디지털 이미지 혹은 그래픽 1 개, (d) 하나의 URL 이 이에 해당하며, 집합적으로 “공로 제한”이라고 칭한다.

(b) 보충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충 파일의 Part 2 에 공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취인은 최초 기여자에 대한 어떠한 공로 정보도 표시할 의무가 없다.

(c) 각각의 수취인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함께 배포되는 보충 파일의 Part 2 에 포함된 모든 상표나 서비스마크 및 상호가 최초 기여자의 독점적인 재산이며, 최초 기여자의 허락을 받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또는 본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조 11 항.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보충 파일 내에 포함된 어떠한 설명이나 공로에 대한 조항은 그 설명이나 공로에 대한 요구사항의 성격을 상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당 경우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 또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변형하거나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보충 파일 내에 포함된 조항들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못한다.

제4조. 상업적 사용 및 면책

4 조 1 항. 상업적 서비스

수취인(“상업적 수취인”)는 임의로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수취인 또는 배포자에게 보증이나 지원, 면책 또는 책임 의무(“서비스”로 통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업적 수취인은 이를 단독으로만 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배포자나 수취인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상업적 수취인은 그러한 보증이나 지원, 면책 또는 책임 의무가 상업자 수취인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본 라이선스의 다른 규정들이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소스 코드나 실행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떤 대상이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소스 코드나 실행파일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 4 조 1 항은 본 라이선스의 다른 어떤 조건도 축소시키지 않으며, 여기에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소스 코드나 실행 파일의 형태로 배포할 때 사용료 없이 배포해야 한다는 배포자로서의 상업적 수취인의 의무도 제한 없이 포함된다(소스 코드나 실행 파일의 물리적 배포에 소요된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구속되는 범위에서).

4 조 2 항. 면책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자는 최종수요자, 사업상의 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특정한 책임을 수용할 수 있다. 본 라이선스의 의도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지만, 어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에 포함시키는 배포자는 그로 인해 다른 배포자에게 잠재적 의무가 생성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배포자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에 포함시키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배포자(“상업적 배포자”)는 다른 모든 배포자나 후속 기여자(각각 “면책 당사자”)를 상대로 제 3 자가 제기한 청구나 소송 및 기타 법적 행위로 인한 어떤 손실이나 손해, 비용 (“손실”이라고 통칭)으로부터 그 면책 당사자를 보호하고 면책시키는데 동의한다. 이는 그러한 상업적 배포자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이나 기타 서비스와 관련되어 배포하는 행위나 행위의 누락으로 인해 야기된 정도까지를 포함한다. 본 조항의 의무사항은 사실상의 혹은 주장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청구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을 받기 위해, 당사자는 (a) 그러한 청구를 서면으로 상업적 기여자에게 즉각 알려야 하고, (b) 방어나 기타 해결을 위한 협상을 상업적 기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협력해야 한다. 면책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청구에 참가할 수 있다.

제5조. 라이선스의 버전

5 조 1 항. 신규 버전

최초 기여자는 때때로 라이선스의 개정된 버전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각각의 버전은 버전 넘버를 통해 구별된다.

5 조 2 항. 신규 버전의 효력

최초 기여자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그 일부를 본 라이선스의 특정 버전에 따라 공표했다면, 수취인은 이를 사용함에 있어 계속해서 해당 버전의 규정에 따를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최초 기여자에 의해 공표된 라이선스의 후속 버전의 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선택을 결정한 해당 날로부터 그 수취인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관련한 모든 복제, 파생 저작물의 준비, 전시, 공연, 배포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에 대하여, 해당 후속 버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최초 기여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수정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6조. 보증의 부인

6 조 1 항. 일반적 부인

본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은 소유권, 비 침해,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진술이나 보증, 보장, 확인 또는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품질과 작동과 관련한 모든 위험은 전적으로 수취인에게 있다. 어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결함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서비스나 수선, 혹은 교정과 관련한 비용은 (최초 기여자나 다른 후속 기여자가 아닌) 수취인이 부담한다. 이 조항은 본 라이선스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 보증 부인 조항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6 조 2 항. 수취인의 책임

각각의 수취인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니며, 본 계약서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및 적용 법률의 준수, 데이터나 프로그램 혹은 장비의 손상 및 손실, 운영 불능 및 중지로 인한 위험 및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7조. 종료

7 조 1 항. 본 라이선스는 여기에 명시된 조건들에 따라 종료되기 전까지 지속된다.

7 조 2 항. 수취인은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본 라이선스를 자동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7 조 3 항. 본 라이선스는, 특정 수취인에게 부여하는 권한들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해당 수취인이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 사항을 인지한지 60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앞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수취인이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다른 어떤 라이선스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이는 본 라이선스의 실질적 위반에 해당된다.

7 조 4 항. 특정 수취인에 의해, 혹은 그와 관련되어 어떤 이유로 본 라이선스가 종료될 경우, 해당 수취인에게 부여된 본 라이선스의 모든 권한 및 다른 모든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한이 종료된다. 그러나, 과거에 해당 수취인에 의해 적절한 방식으로 본 라이선스의 복제본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서브라이선스(“기타 라이선스”)는 본 라이선스가 종료하더라도 효력이 지속되며, 여기에는 그러한 기타 라이선스의 제 2, 3, 4, 5, 6, 7, 8 조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시된 권한과 의무 제한 없이 포함된다. 단, 이는 서브라이선스를

양도받은 이(즉, 다른 수취인)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양도받은 본 라이선스 복제본의 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하는 조건에 한해서 유효하다. 그러한 기타 라이선스의 종료는 해당 라이선스의 제 7 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속성 항 본 라이선스의 종료와 관계없이 효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조항들은 효력이 지속될 것이다.

7 조 5 항. 본 라이선스가 특정 해당자와 관련하여 종료되더라도, 4 조 1 항과 4 조 2 항, 6 조 1 항과 6 조 2 항, 7 조 4 항과 7 조 5 항, 8 조 1 항과 8 조 2 항 및 본 라이선스의 해석과 집행에 필요한 본 라이선스의 모든 조항들은 효력이 지속된다.

제8조. 면책 조항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최초 기여자, 그의 자회사나 관계 회사, 혹은 임원, 이사, 고용인 및 대리인(경우에 따라)은 본 라이선스, 또는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사용 및 배포, 또는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한의 집행이 원인이 되거나 관련이 되어 발생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손해, 징벌적 손해, 우발적 손해,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결과적 손해 및 기타 어떠한 형태의 손해(데이터나 이익, 효용의 손실을 비롯하여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그 일부의 사용, 사용 불가, 무허가 사용, 작동,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및 비제공으로 인한 손실, 오류나 결함, 누락, 작동이나 전송의 지체 및 작동 불능으로 인한 기타 손실 등을 제한 없이 포함)에 대해, 손해의 발생 원인이나 특정 책임론, 계약, 무과실 책임, 불법 행위(과실 등을 포함)에 관계 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면책 조항은 관련 법규의 제한을 받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망이나 개인적 상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본 라이선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본 8 조 1 항에 제시된 면책 부분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8 조 2 항. 사전에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 라이선스에 의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각각의 수취인은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의 사용이나 배포, 또는 여기에서 부여하는 권한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일반적이거나 결과적 손해(이익 손실을 제한 없이 포함)에 대해, 손해의 원인이나 어떤 책임론, 계약, 무과실 책임 및 불법 행위(과실 등을 포함)에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면책 조항은 관련 법규의 제한을 받는 한도 내에서, 해당 주체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망이나 개인적 상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준거법과 법적 조치

9 조 1 항. 본 라이선스는 법률 저촉 조항과 관계없이 Exhibit A 의 Part 3 에 지정된 재판관할지의 법률에 의거하여 통제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본 라이선스에 따라 발생한지 1 년이 지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각각의 당사자는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 본인의 배심 재판권을 포기한다. 만약 Exhibit A 의 Part 3 에 재판관할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관할지는 뉴욕주가 된다.

9 조 2 항. 재판관할지의 법정은 본 라이선스의 적법성, 타당성, 존속 및 집행가능성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본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청구를, 이행청구,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에 관계없이 받아들이고 결정할 수 있는 재판권을 지닌다. 이 재판권은 독점적이지 않으며 법률이나 형평법 모두에 적용된다. 본 라이선스의 각 당사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재판관할지의 법정의 판결을 승인 및 수용하며, 이는 취소될 수 없다.

9 조 3 항. 본 라이선스의 다른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당사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나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경우, 승소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및 경비를 법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제10조. 기타 사항

10 조 1 항. 본 라이선스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는 최초 기여자 및 모든 수취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각 수취인은 최초 기여자 및 다른 수취인이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들을 수취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10 조 2 항. 본 라이선스는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동의를 선언하며, 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에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두 및 서면 상의 의사교환, 합의 및 협약을 대체한다.

10 조 3 항.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UN 협약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10 조 4 항. 본 라이선스의 모든 부분에 사용되는 언어는 어떤 경우에도 그 본래의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하며, 당사자 중 누구에게도 전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서의 언어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모든 법이나 규제는 본 라이선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10 조 5 항. 만약 본 라이선스의 어떤 조항이 재판 관할지의 법률 하에서 타당하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 라이선스의 나머지 조항들의 타당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또한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 조항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타당하고 집행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10 조 6 항. 본 라이선스의 각 조항에 붙여진 제목은 참조와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 라이선스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라이선스의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를 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조 7 항. 본 라이선스에서 “포함”이라는 용어는, 이와 관련하여 무제한적 의미의 표현 (“제한 없이” 혹은 “-에 국한되지 않는” 등)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다.

10 조 8 항. 각 당사자는 그들이 본 라이선스 및 그에 관련된 고지사항들이 영어로 작성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을 인정한다.

//*** 라이선스 규정의 끝 (Exhibit A에 제시된 내용 제외) ***//
EXHIBIT A (적용 가능 공중 라이선스)

PART 1: 최초 기여자와 지정 웹사이트

최초 기여자: _____

[최초 기여자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최초 기여자의 주소: _____

[상단에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지정된 웹사이트:

[최초 기여자의 지정 웹사이트 URL 을 입력하십시오]

주의 사항: 최초 기여자는 Part 1 과 Part 2, 3, 5 를 작성하고,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Part 4 와 Part 6 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PART 2: 최초 저작물

최초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지는, 최초 기여자에 의해 배포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_____.

본 라이선스에 의해 최초 저작물이 최초로 제공된 날짜: _____

PART 3: 재판 관할지

본 라이선스에 대한 재판 관할지: _____.

[최초 기여자는 이곳에 재판 관할지를 입력하십시오]

PART 4: 제 3 자

본 라이선스에서 최초 기여자가 최초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할 때, “제 3 자”는 최초 기여자가 구문 A, B, C, D, E 중에서 선택한 하나의 구문에 제시된 정의를 따른다. 최초

기여자는 다음의 구문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선택된 구문의 옆에 위치한 선택 박스에 “X” 또는 “x”를 기입해야 한다.

선택

박스

구문

[]

A. “제 3 자”는 모든 제 3 자를 의미한다.

[]

B. “제 3 자”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제 3 자를 의미한다: (a) 문제의 후속 기여자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 (b) 문제의 후속 기여자를 전액 출자회사로 소유하는 법인 (“모회사”); (c) (a) 의 전액 출자 자회사 또는 (b) 의 모회사에 대한 전액 출자 자회사.

[]

C. “제 3 자”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제 3 자를 의미한다: (a)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후속 기여자에 대한 의결권주의 과반수를 소유한 개인; 또는 (b) 후속 기여자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의결권주의 과반수를 소유한 개인.

[]

D. “제 3 자”는 후속 기여자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리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제 3 자를 의미한다. 본 정의에서 “관리”란 의결권의 소유나 계약 및 기타 수단을 통해 그 사람의 경영이나 정책에 대한 감독을 조정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 E. "제 3 자" 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후속 기여자를 관리하거나, 후속 기여자에 의해 관리되거나, 후속 기여자와 함께 공동 관리를 받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제 3 자를 의미한다. 본 정의에서 "관리"란 의결권의 소유나 계약 및 기타 수단을 통해 그 사람의 경영이나 정책에 대한 감독을 조정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최초 기여자가 Part 4 의 구문 A, B, C, D, E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거나 한 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 "제 3 자"의 정의는 구문 A 에 제시된 것으로 한다.

PART 5: 주의사항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은 _____ **[최초 기여자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 의해 최초로 완성된 상태로 적용 가능 공중 라이선스("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사용, 전시, 공연, 시행, 복제, 배포, 또는 파생저작물 작성하는 모든 행위는 수취인이 라이선스와 그 규정을 승낙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 수취인이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읽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과 "수취인"은 라이선스에 정의되어 있다.

라이선스의 사본은 "LICENSE.TXT"라는 이름의 파일 안에 저장되어 이 파일의 콘텐츠와 동봉되어 있다. 만약 라이선스의 사본이 파일에 동봉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라이선스의 사본을 구할 수 있다: _____ **[최초 기여자의 지정 웹사이트를 입력하십시오]**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어떤 종류의 보증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라이선스에 의거한 권리와 제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참고하라.

PART 6: 특허 라이선스 규정

본 라이선스에서 Exhibit A 의 Part 6 의 구문 A, B, C, D, E 는 최초 기여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질문의 YES 옆에 있는 괄호에 "X"나 "x"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라이선스의 규정의 일부로 통합된다.

이것은 본 라이선스의 제 2 조 2 항에 따른 특허 포함 라이선스입니까?

YES []

NO []

최초 기여자가 YES 를 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답은 자동적으로 NO 가 된다.

A. Exhibit A 의 Part 6 의 구문들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가능한” 이란, 최초의 부여 시점이나 이후에 획득한 시점에, 이 문서에 부여된 모든 권리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부여할 권리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B. 최초 기여자는 최초 저작물이나 그 일부를 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수출, 전송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 침해되는, 최초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특허 청구권에 따라, 제 3 자 지식재산권에 구속되는,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모든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앞의 내용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허 라이선스도 구문 B 에 따라 최초 기여자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다: (1) 최초 기여자가 최초 저작물에서 삭제한 코드의 경우; (2) 다른 사람에 의해 최초 저작물(혹은 그 일부)에 대해 작성된 수정본의 경우; 또는 (3) 최초 기여자에 의해 배포되거나 제공된 최초 저작물(혹은 그 일부)과 별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C. 후속 기여자는 모든 수취인에게 다음과 같은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이는 후속 기여자가 자신이 작성한 수정본을 제 3 자에게 배포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해당 후속 기여자가 만든 수정본이나 그 일부, 및

(2) 후속 기여자가 만든 수정본과 그 후속 저작물의 결합물, 혹은 그 결합물의 일부

(각각의 경우나 집합적으로 “**후속 기여자 버전**”이라고 칭함)

를 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주문제조, 수입, 수출, 전송 및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 라이선스는 제 3 자 지식재산권에 의해 구속을 받으며, 해당 후속 기여자가 만든 수정본을 단독으로 혹은 그의 후속 저작물과 결합된 형태(혹은 그 결합물의 일부)로 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수출, 전송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 침해되는, 후속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특허 청구권에 의해 부여된다.

앞의 내용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허 라이선스도 구문 C 에 의거하여 해당 후속 기여자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다: (1) 해당 후속 기여자가 후속 기여자 버전(혹은 그 일부)로부터 삭제한 코드의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의해 후속 기여자 버전(혹은 그 일부)에 대해 작성된 수정본의 경우, 또는 (3) 후속 기여자에 의해 배포되거나 제공된 후속 기여자 버전(혹은 그 일부)과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

D. 배포자는 모든 수취인에게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이는 배포자가 어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제 3 자에게 배포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이나 그 일부(각각의 경우나 집합적으로 “배포자 버전”이라고 칭함)를 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수출, 전송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제 3 자 지식재산권에 의해 구속되며, 해당 라이선스 적용 저작물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수출, 전송 또는 처분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배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특허권에 의해 부여된다. 앞의 내용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허 라이선스도 구문 B 에 따라 배포자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다: (1) 배포자가 후속 배포자 버전(혹은 그 일부)으로부터 삭제한 코드의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의해 배포자 버전(혹은 그 일부)에 대해 작성된 수정본의 경우, 또는 (3) 배포자에 의해 배포되거나 제공된 배포자 버전(혹은 그 일부)과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

E. 만약 수취인이 다른 수취인 (“사용자”) 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에서의 교차 청구나 반소를 포함하며, 특허 청구항들이 시스템, 방법, 프로세스, 기계, 장치, 상품, 제조품에 대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사용자에게 의해 해당 수취인에게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모든 특허나 저작권 라이선스는 종료된다. 수취인이 사용자로부터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특허 소송 청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통지한 날로부터 90 일이 지나면 종료의 효력이 발생된다. 라이선스 종료 통지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특허에 대한 상세한 리스트, 그리고(또는) 라이선스 종료 시에 수취인에 의해 침해될 것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저작물의 복제본을 통지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라이선스 종료는 적절한 통지가 주어진 특허나 저작권에 대해서만 효력을 지닌다.

PART 7: 배포된 수정본의 설명에 대한 요구사항의 샘플

각각의 후속 기여자(최초 기여자가 후속 기여자의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최초 기여자를 포함)는 그 후속 기여자에 의해 작성되거나 기여된 각각의 후속 저작물 내에, 그 후속 기여자가 그 후속 기여물을 작성하는데 있어 가해진 수정 사항과 수정된 날짜를 기록하는 파일을 포함할 것을 권유한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EXHIBIT A 의 끝 ***//